

# 주주총회 안내문

주주각위

##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

주주 여러분의 번영과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주주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사정상 참석을 못하시는 주주님께서는 동봉한 별첨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일시: 2021년 5월 03일(월요일) 오전 10시

장소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별첨: 1. 소집통지서

2. 참석장, 대리위임장
3. 위임장
4. 부의 안건에 관한 내용

2021년 04월 19일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

# 제6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 여러분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.

상법 및 당사 정관에 의거, 제6기(2020.1.1 ~ 2020.12.31)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1년 5월 03일(월) 오전 10시

2. 장 소 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## 3. 부의안건

제1호 안건: 제6기(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안건: 사내이사 곽요환 선임의 건

제3호 안건: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

## 4. 지참서류

1) 참석증

2) 개인신분증

3) 개인인감도장(법인일 경우 법인인감도장)

4) 개인인감증명서 1부(최근 3개월 이내,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)

5) 주주총회 참석 위임장(대리인인 경우-주주 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 증명서 첨부 및 참석하는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)

2021년 4월 19일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 
대표이사 하태석 [직인생략]

## 참석장

본인은 (주)이시스코스메틱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겠습니다.

일시: 2021년 5월 03일(월요일) 오전 10시

장소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2021년 월 일

회사명:

대표명: (인)

## 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증

## 대리위임장

본인은 \_\_\_\_\_ 을(를)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21년 3월 26일  
개최되는 제6기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.

일시: 2021년 5월 03일(월요일) 오전 10시

장소: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79 (주)이시스코스메틱 4층 대회의실

2021년 월 일

회사명:

대표명: (인)

## 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증

# 위 임 장

주주번호	
------	--

## 소유주식현황

소유주식수	
의결권있는 주식수	
위임할 주식수	

본인은 \_\_\_\_\_을 대리인으로 선임  
하여 아래의 권한을 위임합니다.

2021년 5월 03일 개최되는 제6기  
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 
대리행사하는 권한

번호	주 주 총 회 목 적 사 항	찬성	반대
1	제6기(2020년 1월 1일 ~ 2020년 12월 31일) 재무제표 승인의 건		
2	사내이사 과요환 선임의 건		
3	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		

※ 의안의 찬부표시는 해당란에 '○'표를 하여 주십시오.

##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위임

- 주주총회시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목적사항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 목	지 시 내 용

2021년 월 일

사업자등록번호/주민등록번호 :

회사명/주주성명 : (인)

주식회사 이시스코스메틱 귀중

[별첨] 부의안건에 관한 내용

제2호 안건: 사내이사 곽요환 선임의 건

직책명	성명	출생년월	약력	추천인	최대주주와 관계
사내이사	곽요환	1980.12.08	전) 폭스바겐 현) 이시스코스메틱 공장장	이사회	-

제3호 안건: 임원퇴직금지급규정 개정의 건

(1) 주요내용: 특별위로금 지급 한도 퇴직금의 50%에서 연봉의 200%로 변경

(2) 세부내용: 하기내용 참고

원안	개정안
<p><b>제6조 (특별위로금)</b></p> <p>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퇴직금의 50%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6조 (특별위로금)</b></p> <p>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봉의 200%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